

균형적인 남북 저작권 교류를 위한 교섭력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김시열* · 최나빈**

- I. 서론
- II. 남북 저작권 교류상 교섭력 문제
- III. 소비에트 VAAP와 해외 이용자의 대응
- IV. 교섭력 문제의 대응방안
- V. 결론

국문요약

최근의 검색된 남북관계는 저작권의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단 이후를 제외한 모든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남북의 저작권 교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것은 자명하다. 특히 자유로운 시장의 존재가 보장된 남측에서의 북측 저작물 활용은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활발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측 교류창구가 독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적 허용을 벗어나는 계약의 체결은 이러한 수요 확대에 인한 남북 저작권 교류 활성화의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 소비에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회주의 체계에서의 저작권 거래는 구조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 유리한 협상력을 가져다준다. 우리 역시 이러한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

으며, 현재의 남북 간 저작권 교류 체계에서 북측의 저작권사무국이 갖는 협상상의 지위는 절대적이어서 남측의 북측 저작물 이용자들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북측에 대한 협상을 통한 공세보다는 우선 남측의 이용자들이 서로 과도한 경쟁에 빠지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북측과 저작권 교류를 위한 교섭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하여 남측 이용자 간 공동 거래체계 마련, 남북 간 저작권공동기구 설립 및 표준계약 사항의 합의를 통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북한, 저작권, 저작권사무국, VAAP, 소비에트, 저작권 이용계약, 교섭력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I. 서론

2010년의 5·24조치 이전까지 남북교역 규모는 약 연 7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¹ 이러한 흐름은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² 채택 이후에 보다 가속화되어 왔다. 남북 간 교역은 주로 북측의 특정 행위가 남북의 상업적 교역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반대로 남북의 상업적 교역이 북측³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⁴ 즉, 북측의 비우호적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 일방적으로 남북 간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작권 분야는 1988년 7월 19일 월북작가 작품들의 해금조치 이후 서적, 음반, 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들을 북측으로부터 남측에 반입 및 활용하고 있다.⁵ 특히 2004년 북측의 내각 산하에 저작권사무국이 설립되어 저작권사업을 대내외적으로 총괄하게 되고, 남측 역시 2005년부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하여 북측의 저작물을 위탁·유통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점차 북측 저작물을 남측 내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촉매가 되었다.

그런데 사회주의 체제인 북측은 사실상 국가기관인 저작권사무국에 의하여 저작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반하여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남측에서 저작권 행사의 주체는 창작자 개인이 원칙이며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허락계약 등의 주체

¹ 사실상 남북교역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을 제외하면, 5·24조치 이후의 남북교역은 그 규모가 2011년 1,622만 달러, 2012년 991만 달러에 불과하여 사실상 거의 모두 중단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석, 『5·24 조치 이후 북중무역과 남북교역의 변화 분석』(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 p. 32~33.

² 정식명칭은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로 1991년 12월 13일 제6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하여 1992년 2월 19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외에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년), 「6·15 남북공동선언」(2000),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등이 있다. 최근에는 기본합의서를 비롯한 남북간 합의 성과를 문화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남북 문화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박영정, “남북문화합의서 체결 추진 원칙과 방향,”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남북문화합의서의 원칙과 방향』(2015. 6. 12), pp. 4~6.

³ 남측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를 지칭하는 공식명칭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남측’으로, 후자를 ‘북측’으로 약칭하여 기술한다.

⁴ 이석, 『대북정책의 경제적 성과: 실증적 평가와 시사점』(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0), pp. 57~68.

⁵ 최은석, “북한의 저작권법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쟁점,” 『서강법학』 제11권 제2호(2009), p. 247.

가 된다. 이와 같은 남북 간 저작권 거래 주체의 불일치는 현실에서 양 주체간 교섭력⁶의 차이를 초래하며, 남측의 이용자들은 북측과의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다.⁷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측의 저작물을 남측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계약체결을 전제로, 먼저 남북 간 저작권 교류 시 발생하는 교섭력 차이 문제를 법적 구조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전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관련된 사례를 살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여, 우리가 북측과의 저작물 교류 시 교섭력 확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⁸

II. 남북 저작권 교류상 교섭력 문제

1. 북측 저작권법상 권리행사 주체

가. 저작권의 귀속

북측 저작권법은 그 체계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는 민법의 특별법인 남측의 저작권법과 달리 북측의 민법은 공법의 한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⁹ 저작권법을 과연 민법의 하위 법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다. 북측의 저작권법이 문화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함¹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남측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법 적용의 최고 지도원리이자 초헌법적 규범인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 이념이 저작권법의 해석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며,¹¹ 출판·공연·방송이 금지되는 저작물의 저작권 불인정(북측 저작권법 제6조), 저작권 보호기간을 발표시점부터 개시하도록 한다는 점(동법 제23조), 저작물이

⁶ 이때 교섭력은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 시 거래조건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⁷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 『법학연구』, 제11집 (2002), p. 107.

⁸ 다만, 연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북측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2003년 6월 11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 정령 제3831호에 의하여 제정)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⁹ 시장경제체제와 달리 북측에서 민법은 본질상 계획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보조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여 민법에 관한 규범 역시 계획경제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송진호, “북한법 이해의 새로운 모델: 분류와 체계,”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남북법제분과』 (2012. 6. 27~28), p. 115.

¹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2001. 4. 5. 최고인민회의의 채택) 제1조.

¹¹ 송진호, “북한법 이해의 새로운 모델: 분류와 체계,” p. 105.

용료를 국가에 의한 가격제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여 계약자유를 제한한다는 점(동법 제31조), 저작재산권의 국외양도는 국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는 점(동법 제21조) 등은 북측의 저작권법이 일부 자본주의적 요소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법제도로써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¹² 북측의 법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하, ‘소비에트’이라 한다.)’은 저작권법 체계가 별도의 법률로 존재하였으나, 점차 국가에 의한 권리가 확대됨에 따라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가 상당히 저하되어,¹³ 1961년 저작권법 개정 시 민법전에 저작권에 관한 장(章)을 둬으로써 저작권법을 민법에 편입시킨 바 있었다.¹⁴ 이러한 점이 일정 부분 북측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북측 저작권법은 일정부분 사권(私權)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¹⁵ 등을 고려하면 성격상 민법체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¹⁶

이러한 체계하에 북측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받은 자’로 정하고 있으며(북측 저작권법 제13조),¹⁷ 개인의 이름으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에 귀속한다고 명시(동법 제16조 전단)하여 권리의 개인 소유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¹⁸ 한편 개인의 창작이 아니라 기업·기업소·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서는 그 기업·기업소·단체가 저작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6조 후단).

그런데 북측 저작권법은 사회주의적 특성을 반영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창작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출판·발행·공연·방송·상영·전시 같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그 저작물의 저작권은 보호되지 않는다(북측 저작권법 제6조). 이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출판·발행 등이 불허되는 것이라 하

¹²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 p. 78; 최상필, “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67호 (2015), p. 196 등.

¹³ 김상호, “소련 저작권 제도의 해설 -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 『계간저작권』, 1990년 가을호 (1990), p. 70.

¹⁴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 p. 79.

¹⁵ 물론 일부 사권의 성격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중요하게 다룬다고 보기 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국가적 이익과 일치될 때 이를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¹⁶ 송진호, “북한법 이해의 새로운 모델: 분류와 체계,” p. 115.

¹⁷ 이러한 개념은 저작자를 창작자 중심으로 보지 않고 저작권을 승계한 저작권자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며, 이는 개인과 단체간의 이익이 상충하는 사례를 염두한 것을 이유로 본다. 박중배,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6권 제1호 (2011), p. 95.

¹⁸ 사회주의 헌법 제24조에 의하면, 북측에서의 개인소유는 개인적이고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에 한정하여 인정되고 있다.

더라도 저작권의 보호 여부와는 구분되는 남측 저작권법의 경우와 구분된다.¹⁹ 둘째, 저작권의 대상을 해당기관의 선정절차를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으로 과학성·객관성 및 현실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8조). 이와 같이 저작물에 권리를 부여함에 따른 높은 제한은 체제유지에 위협이 되는 창작물을 저작물의 보호 대상에서 거를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²⁰

북측의 저작권 소유체계에 대한 평가는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다. 첫째는 북측 저작권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개인 창작자에게도 일정한 권리가 인정되며, 집체창작만이 아니라 개인 명의의 작품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다.²¹ 즉, 사유재산으로써 저작권의 개인 소유가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북측에서의 창작은 개인단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문적인 창작은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²²에 소속된 정맹원인 국가기관의 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개인이 창작자는 될 수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저작권자는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일부 개인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극히 드문 것으로 본다.²³ 사건으로는 창작활동에 있어서 소위 ‘집체창작²⁴’이라는 개념하에 저작물을 만드는 북측의 특성과 저작권의 보호를 사인의 권리보호적 관점보다는 체제와 혁명과업을 위한 관점에서 인정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자의 입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일부 우리가 접하는 단계에서 개인 창작물로 보이는 작품들이 존재하긴 하더라도 북측의 내부적 권리관

¹⁹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

²⁰ 최상필, “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에 관한 연구,” p. 205.

²¹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 p. 90.

²² 소속단체로는 조선작가동맹, 조선미술가동맹, 조선무용가동맹, 조선음악가동맹, 조선영화인동맹, 조선연극인동맹, 조선사진가동맹 등이 있으며 북측의 모든 작가 및 예술인들은 반드시 문예총과 그 소속단체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술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²³ 박종배,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p. 77; 최상필, “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에 관한 연구,” p. 205; 최은석, “북한의 저작권법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쟁점,” p. 234.

²⁴ 집체창작이란, 다른 모든 부문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집체적 지혜의 의거하면, 인민들을 혁명사상으로 교양할 수 있는 사상 예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예술작품을 더 성과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북측의 노동당은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집체적 지혜에 의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 작품을 많이 창작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창작 시 집체창작조는 함께 모여 구성 및 구상을 하며 그것을 해당 참가 인원의 수대로 나누어서 창작시켜 초고를 만들고, 이를 집체적으로 검토하고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저작물을 완성시킨다. 최은석, “북한의 저작권법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쟁점,” pp. 234~235.

계상 진정한 개인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저작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단체 등의 이름으로 창작된 것으로서 사실상 대부분의 저작권은 국가소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권리주체의 저작권 행사

북측에서 저작물의 이용은 복제·공연·방송·전시·배포·개작·편집 같은 방법으로 저작물을 보급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의 요구대로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북측 저작권법 제26조).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자가 하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만일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동법 제29조),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에게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때 요금은 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동법 제31조).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저작물이용요금은 당사자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일률적으로 가격제정기관에서 정한다는 것과 저작물이용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일종의 표준계약에 의하여 그 내용이 정하여진다는 특징이 있다.²⁵ 먼저 저작물 이용요금을 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는 것은 저작물이용계약을 사인간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보기보다는 국가가 주도권을 갖고 진행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형태는 소비에트 등의 경우에도 찾아볼 수 있듯이 사회주의체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²⁶ 그리고 저작권의 개념을 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적인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북측 저작권법의 태도로 볼 때²⁷ 거래의 내용을 국가가 정한다는 점은 그 내용을 저작권사업의 달성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할 것임이 앞서서와 같이 당연할 것으로 생각된다.

²⁵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 p. 94.

²⁶ 박종배,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p. 97.

²⁷ 조수신, “남북한문화교류상의 저작권협력문제에 관한 일고찰 - 출판·음반·영상물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2000 봄철 정기 학술 발표대회』 (2000), p. 356.

다. 저작권 관리규정과 저작권사무국

국가는 저작권사업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와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의 저작권보호정책 집행을 위한 기본담보라 한다(동법 제41조).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북측 저작권법 제42조). 북측에서 저작권에 대한 업무는 정무원 문화예술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출판지도기관, 문화지도기관 및 과학기술지도기관은 내각인 정무원 문화예술부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출판지도기관, 문화지도기관 및 과학기술지도기관은 저작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기관으로 작용하며(동법 제45조), 이들은 내각이 승인 시 저작권사업에 필요한 대리기관을 둘 수 있다(동법 제43조).

이러한 체계하에서 북측은 저작권사업을 효과적으로 지도 및 통제하기 위하여 출판지도기관, 문화지도기관 및 과학기술지도기관은 필요한 대리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북측 저작권법 제43조 및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해외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 시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동법 제21조에 근거하여 2004년 4월부터 저작권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²⁸ 저작권사무국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 출판지도국 판권처에서 저작권사업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2003년 베른협약 가입 이후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저작권 업무를 담당할 국가기관의 필요성을 느껴 저작권사업을 대내외적으로 총괄하는 기구인 저작권사무국을 내각 산하에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²⁹ 저작권사무국은 북측의 저작권사업 전담 행정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³⁰

저작권사무국은 외국 출판사가 북측 출판사 등과 체결한 계약 내용을 심의 및 승인하고, 저작권 분쟁을 중재 또는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북측의 저작권이 외국에서 침해, 훼손되는 사례들을 감시 및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³¹ 남측을 포함한 대내외적으로 북측의 모든 저작권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고 있다.³²

²⁸ 신현욱, “북한의 저작권 전담 행정기구 설립에 따른 남북 저작권 교류의 환경 변화 연구,” 『현대북한연구』, 12권 3호 (2009), p. 127.

²⁹ 위의 글, p. 127.

³⁰ 위의 글, p. 140.

³¹ 한지영, “북한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물의 법적 보호,” 『창작과 권리』 (2008), p. 103.

³² 전영선, “남북 문화교류와 저작권 문제,” 『지적재산권』 (2008. 7), p. 31. 아울러, 2005년 3월 21일 북측 저작권사무국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하여 남측 통일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사무국은 저작권자의 승인과 저작권사무국의 공증확인서가 없는 한 남측에서의 우

이러한 저작권사무국의 설립은 북측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당사자는 물론 저작권 승계자와 관련된 문제, 공동 저작 또는 단체명의 저작물에 대한 계약 주체의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여 남북이 합법적인 저작권 교류를 수행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³³

2. 남측 저작권법상 권리행사 주체

가. 저작권의 귀속 및 행사

남측의 저작권법 역시 민법의 영향을 받는다. 민법은 3대 원칙으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과실책임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으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으로 3대 원칙을 보완하고 있다.³⁴ 이러한 민법의 체계 하에서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 규정(남측 저작권법 제2조 제2호)하고 있으며,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동법 제10조 제1항)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동법 제10조 제2항)고 하여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저작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및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그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저작물이 성립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모두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다만 업무상저작물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여 개인인 종업원이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 시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 그 사용자가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하기도 한다.

한편,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성질로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채권적 성질을 갖고 있으며 보통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정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

리 저작권에 대한 이용은 저작권침해로 된다는 것을 알립니다.”라고 통지한 사항은 결국 남북 저작권거래에 있어서 북측의 유일한 협상창구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통일부 2005. 4. 19일자 보도자료(남북 저작권 교류 절차에 북측 저작권사무국 통지사항 반영) 참조.

³³ 신현욱, “북한의 저작권 전담 행정기구 설립에 따른 남북 저작권 교류의 환경 변화 연구,” p. 122.

³⁴ 광운진·김재형, 『민법총칙(민법강의 I)』, 제8판 (서울: 박영사, 2012), pp. 37~46.

사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게 할 수 있다.

즉, 남측의 저작권법은 개인의 재산적 권리 소유를 기초로 하고, 정당한 저작권 거래는 저작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민법의 수정된 3대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나.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남측 저작권법은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통하여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집중관리란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갈음하여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저작권관리단체가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³⁵ 일반적으로 저작권 등의 집중관리는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자와 그 위탁을 받는 저작권관리단체 사이의 법률행위와 그 관리단체와 저작물 이용자 사이에 행해지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전자에 있어서는 그 위탁의 내용이 저작권 이용의 대리, 중개 또는 신탁행위의 형태로 행해지며,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와 저작권관리단체 사이에 그 관리단체가 징수하는 당해 저작권의 이용료 중 권리자에게 지급된 분배금액과 관리단체가 얻는 보수액이 결정되게 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 저작권관리단체와 이용자 사이에는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근거하여 이용자는 그 사용료를 지불하게 된다. 다만, 저작권관리단체는 저작권 이용에 대하여 권리자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행태의 계약을 피하여야 한다.³⁶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1986년 12월 31일자 법률 제3916호로 이루어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도입으로 이루어졌다(남측 저작권법 제78조). 이에 근거하여 1988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관리업을 허가받아 시작한 이후 현재 12개의 신탁단체³⁷가 존재하며, 600여 곳의 대리중개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하여는 남측 저작권법 제105조 내지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위탁관리업은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탁의 대상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

³⁵ 이해완, 『저작권법』 (서울: 박영사, 2012), p. 748.

³⁶ 위의 책, p. 748.

³⁷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인론재단’,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있으며, 저작권집권을 관리하는 단체로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음악제작자협회’가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다.

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해당되며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이들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의미하며, 저작권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³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저작권대리중개업에서 대리중개의 대상 역시 저작재산권자, 배타적 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해당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이들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해당 권리를 가진자를 위하여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³⁹

다. 남북 저작권 교류 체계 현황

남측 내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중 북측과 저작권 교류를 수행하는 곳으로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⁴⁰과 그 산하의 ‘(주)남북저작권센터’⁴¹가 있다. 북측의 저작권 사무국은 2005년 남측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북측 저작물의 사용을 원하는 남측의 사용 희망자와 북측을 대리하여 포괄적인 사전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여 저작권 관리를 위임함에 따라 북측 저작물이 남측에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산하 ‘(주)남북저작권센터’를 통하여 교류되고 있다.⁴²

다만,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5·24 대북 제재 조치의 영향으로 남측에서 북측 저작물의 이용으로 발생한 저작권료⁴³가 북측으로 전달될 수 없어 남측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주)남북저작권센터가 2014년 현재 위임받

³⁸ 포괄적 대리에 관한 규정은 2007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 당시 신설된 사항으로써, 개정 전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는 신고의 대상인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대상에서 “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포괄적 대리라는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었다. 법률상 문구 자체만을 볼 때는 포괄적 대리가 대리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 없이도 수행할 수 있는 대리중개업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었으나 이는 대리중개를 신고하도록 한 취지에 맞지 않아 부적절하고, 이를 신탁관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근거가 부족하여 포괄적 대리업이 허가의 대상인지 혹은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것이 논의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논의를 2007년 개정을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이병규, “저작권관리업법 제정의 쟁점과 입법론적 제언,” 『창작과 권리』, 제54호 (2009), p. 101.

³⁹ 이해완, 『저작권법』, p. 759.

⁴⁰ 문화체육관광부 신고 제426호.

⁴¹ 문화체육관광부 신고 제468호.

⁴² 남북 간 저작권 교류체계의 자세한 현황 및 구조는, 최경수, 『북한 저작권법 및 남북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pp. 105~112 참조.

⁴³ 한 예로 홍석중 작가의 소설인 “임궽정”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남측에서 출판한 것에 대해 15만 달러의 저작권료를 지급받았다. 『한겨레신문』, 2005년 5월 11일(“남-북, 첫 저작권 계약 맺었다.”).

은 북측 작가의 저작권은 2009년에 맺은 10명이 전부이며,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 되면서 추가적인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⁴⁴

3. 교섭주체의 불균형 문제

북측에서 남측과의 저작권 거래는 저작권자(창작자 개인인 공민 혹은 조선문학 예술총동맹 및 그 산하단체가 된다.)의 이용허락과 함께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저작권사무국의 역할 및 성격에 따라 이러한 체계는 전혀 다른 효과를 갖는다. 저작권사무국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기에는 자료가 충분치 않으나, 북측에서 저작권사무국에 관하여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 처리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으로 소개’하거나,⁴⁵ ‘북한 내의 저작권을 통합적으로 장악·관리하는 국가기관’⁴⁶ 등으로 언급하였다는 점은 저작권사무국이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개인인 저작권자의 의미가 남측에서 통용되는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 다소 의문이 있다. 일단 북측의 저작권법이 형식적으로는 저작권에 대한 사적소유 및 권리행사를 인정하고 있다고는 보이나, 사회주의 체제에서 재산적 권리인 저작권이 과연 창작자 개인의 재산으로서 기능 및 인식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으므로, 남측에 유통되는 북측 저작물에 저작권자로 보이는 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창작한 사람을 특정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재산적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는 북측 정부, 구체적으로는 저작권사무국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북측노래 ‘반갑습니다’가 남측 영화 ‘간 큰 가족’에 삽입됨에 따라 해당 곡의 작곡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그 작곡가가 “당(조선노동당)이 생활을 해결해주고 있는데, 뭐 하러 남조선 괴뢰정부에 내 노래를 팝네까? 일 없습네다.”⁴⁷라고 답하였던 사실은 이를 잘 나타내는 한 예 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의 저작물이 국가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개인에게 창작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는 것으로 북측의 저작권법 체계 및 대외적 현상 등으로 인하여 오해할 수 있으나, 실상은 저작권사무국이 권리행사의 실질적

⁴⁴ 『동아일보』, 2014년 6월 18일(“재발간 백석 시집, 저작권 계약 맺고 先인세까지 냈지만…”).

⁴⁵ 『조선중앙TV』 보도내용, 2008년 12월 7일.

⁴⁶ 『조선신보』 보도내용, 2009년 11월 29일.

⁴⁷ 『오마이뉴스』, 2005년 10월 14일(“왜 내 노래를 남조선 괴뢰에 팝네까?,”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051014115413669>).

인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권능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원칙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의 내용이 통제된다는 점, 이용허락 비용이 정해져있다는 점, 국가나 산하단체에 권리가 사실상 독점되어 있다는 점⁴⁸ 또한 내용상 저작권집중관리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⁴⁹ 등의 사실은 각 저작권자 개인이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며 저작권사무국이 사실상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의 독점적 주체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시사한다.⁵⁰

반면, 남측의 경우에는 북측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구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 권리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계약의 주체가 된다. 즉, 저작권 계약은 철저히 사인간의 영역으로서 국가의 개입이 미치지 않으며, 북측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당연히 저작권자 개인(민간)이 계약의 주체가 된다.

결국 저작권 계약(특히 북측 저작물의 남측 내 이용을 위한 허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은 사실상 국가가 협상주체로 역할을 하는 반면, 남측은 이용자 개인이 협상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구도는 교섭(협상)에 있어서 이용자인 개인에게 매우 불리한 지위를 가져온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남북의 상황에서 현재의 저작권 교류 구도 즉, 국가와 개인으로 대립되는 계약당사자 구도는 북측의 비우호적 행위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남북 저작권 교류 체계에서 활성화 저해 요소 발생에 취약하게 된다. 이에 남측 이용자들이 북측 저작물의 배타적 이용권을 얻기 위해 상호 과당경쟁을 한다든지 하는 때에는 북측 당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으며, 북측 당국과의 관계에서 잘못 보일 것을 두려워 자신들의 의도를 제대로 관철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⁴⁸ 최은석, “북한의 저작권법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쟁점,” p. 255.

⁴⁹ 조수신, “남북교류상의 출판·영상·음반물에 관한 저작권 협력방안,” 『북한실태 2001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논문집』, 제5권 (서울: 통일부, 2001), p. 221.

⁵⁰ 저작권사무국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남측에서 북측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대외 창구는 두 개로 구분되어 있었다. 하나는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에 있는 ‘조선목란비디오’, ‘조선영화수출입사’, ‘조선출판물수출입사’ 등이며, 다른 하나는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 위원회’이다. 남측의 저작물 이용자는 북측의 이러한 기관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남측 중개인들이 제3국인 일본의 ‘서해무역’이나 중국의 ‘심양고려민족문화연구원’과 같은 중개상사를 통하여 북측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므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창구가 매우 복잡해지고 이로 인한 계약당사자 확정의 어려움, 높은 저작물 이용료 등의 문제가 존재하였다. 김명기, 『남북간 저작권 상호보호방안 연구』 (서울: 통일부, 2002), pp. 83~84.

등⁵¹은 남북 간 저작권 교류 시 교섭력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대표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⁵² 또한 남북 간 교역 등 관계구축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동일이므로 결국에는 양 체계의 법제도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섭력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시장의 틀을 벗어나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계약들은 제도 통합을 이루는데 있어 어려움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⁵³이 우려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남북 간의 저작권 교류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는 아니며, 구조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법체계를 채택하는 국가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법체계를 채택하는 국가 사이에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소비에트에서도 저작권 단체(이하, 'VAAP'라 한다.)⁵⁴가 타 국가의 구성원과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독점함으로써 타 국가 출판사와의 관계에서 교섭상의 우위를 발휘하였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⁵⁵ 교섭력 차이에 대한 문제가 보편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북측의 저작권사무국과 사회주의 체제로서 공통점이 많은 소비에트의 VAAP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⁵⁶ 남북간 교섭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⁵¹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 p. 107.

⁵² 이 문제에 관하여 남측에서는 일부 논의가 이루어진 바도 있으나 북측의 경우에도 계약의 주체가 국가 자체가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기관인 사인에 해당한다는 점에 저작권 계약은 사인간 해결해야 할 분야라는 인식을 가진 바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남북 사이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합의서(안)』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1), pp. 41~42.

⁵³ 물론, 이는 남북의 제도통합이 남측의 시장경제제도와 등가의 형태로 진행된다는 일반적인 전제에 따른 것이다. 남북간 경제제도의 통합에 관하여는 이석, 『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 이론, 이슈, 정책』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 pp. 35~37 참조.

⁵⁴ VAAP(Vsesoiuznoe agentstvo po avtorskim pravam; Всесоюз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авторским правам, ВААП).

⁵⁵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 p. 107.

⁵⁶ 최경수, “남북 방송교류를 위한 저작권 문제 점검,” 『방송연구』 (2001), p. 96.

III. 소비에트 VAAP와 해외 이용자의 대응

1. 소비에트 저작권법상 VAAP

가. 소비에트 저작권법 개괄

소비에트에서 저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는 1961년의 소비에트 민법의 기본 원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대륙법적 개념을 채택하여 단순히 재산권 권리 자체보다 저작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⁵⁷ 이러한 개념적 배경하에서 소비에트의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1991년 소비에트 해체를 전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제도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1991년 소비에트 해체 이전까지의 저작권법을 배경으로 VAAP를 살펴본다. 특히 UCC 가입 전의 VOUAP와 달리 국제적 체제를 포함하는 VAAP 체계가 현재 북측의 저작권사무국의 모델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1970년대 소비에트의 저작권 관련 제도적 구조를 비교의 대상으로 한다.

1925년의 제정과 1928년의 2차 개정 이후 약 30년간 지속된 소비에트 저작권법⁵⁸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종업원에 의하여 업무상 창작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실제 이를 창작한 종업원이 저작권을 소유한다.⁵⁹ 즉, 업무상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소비에트 내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과 같은 요식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⁶⁰ 또한 인격권의 보호도 이루어진다. 셋째,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는 객관적인 형태로 표현된 창작적인 작품만이 가능하며,⁶¹ 그 보호기간은 서구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짧게 인정되었다.⁶² 넷째, 저작권 부여가 가능한 작품은 소비에트 내 시민의 작품과 소비에트 영토 내에서 처음으로 출판된 외국 작가의 작

⁵⁷ Igor Pozhitkov, "Author's right and neighbouring right protec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Entertainment Law Review* 5(4) (1994), pp. 124~125.

⁵⁸ 소비에트 저작권법 형성의 연혁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William Scott Goldman, "Berne-ing the Soviet Copyright Codes: Will the U.S.S.R. Alter Its Copyright Laws to Comply with the Berne Convention?," *Penn State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8 No. 3, Article 4, pp. 399~401 참조.

⁵⁹ Elena Muravina, "Copyright Transactions with Soviet Authors: The Role of VAAP," *Loyola of Los Angeles Entertainment Law Review* 421, 1991, p. 438.

⁶⁰ Michael A. Newcity, *Copyright Law in the Soviet Union* (Praeger Publishers, 1978), p. 53.

⁶¹ *Ibid.*, p. 53.

⁶² *Ibid.*, p. 60.

품으로 제한되었으며, 만일 미출간된 경우에는 소비에트 영토에 객관적인 형태로 존재한다면 인정될 수 있었다. 다만, 1973년부터는 해외에서 처음 출판된 해외 저작자의 작품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변경되었다. 다섯째, 저작자의 경제적 권리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용대상 목록에 한정되어 인정되어 매우 제한적이었다. 특히 저작권의 이용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저작자들의 수입을 통제하였다. 여섯째, 소비에트 저작권법은 1973년까지 번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1973년부터는 번역의 자유로운 허용이 폐지된다.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고립화된 형태의 체제를 유지하던 소비에트는 1973년 세계저작권협약(UCC)에 가입함으로써 그 고립을 종료하였으며, 페레스트로이카⁶³는 저작자들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점차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소비에트 저작권 체계를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국가에 의한 일률적인 저작권 이용료 적용을 감소시켰고, 저작권의 해외거래에 대한 국가의 독점 폐지를 가져왔다. 이후 이러한 문제를 대폭 개선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1991년 통과되었으나, 개정법의 발효 이전 소비에트가 해체되었다.

나. VAAP의 설립배경 및 목적

소비에트 내 저작권 관리 조직의 형태는 1930년대 초부터 1973년까지 작가연합, 작곡가연합, 예술가연합 등의 개별적인 저작권 관리 조직들로 구성⁶⁴된 상태였다. 1973년 소비에트가 세계저작권협약(UCC)에 가입하면서 저작권에 관한 고립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에 외국에 대한 저작권 라이선싱의 필요가 대두되면서 1973년 9월 20일에 VAAP를 설립하였다. UCC 가입 전의 소비에트는 외국 저작물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외국의 소비에트 저작물 이용에 대한 로열티 역시 받지 않았다. 그런데 UCC 가입으로 인하여 외국 저작물 이용에 따른 로열티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자국 작가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점이 VAAP의 설립 이유라 볼 수 있다.⁶⁵ 즉, UCC 가입국으로서 서구에서의 소비

⁶³ 1985년 4월에 선언된 소련의 사회주의 개혁 이데올로기 (검색일: 2016. 2. 19.)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65817>.

⁶⁴ Evgeni Guerassimov, *On the copyright agency of the USSR* (UNESCO, Paris, 20 August, 1985), p. 2.

⁶⁵ Elena Muravina, "COPYRIGHT TRANSACTIONS IN RUSSIA," *NEW MATTER* (Winter, 1993), p. 4.

에트 작가들에 대한 권리 보호와 소비에트에서 해외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⁶⁶하고, 저작권 침해로부터 소비에트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조직이라는 의의를 갖는다.⁶⁷

VAAP의 설립 근거로는 소비에트 내각 법령 제588조(a Decree of the USSR Council of Ministers No. 588)⁶⁸에 기관의 기능 및 법적 지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⁶⁹ 이에 따르면 VAAP는 14개 전문적인 연합들과 정부 위원회들에 의해 설립되고, 비정부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명시되어 있다.⁷⁰ VAAP의 ‘비정부적인’ 성격은 소비에트 코멘테이터(Soviet Commentators)들에 의해 승인되었는데,⁷¹ 그들은 VAAP의 ‘비정부적인’ 성격을 강조한 바 있다. 1973년 9월 20일 기관의 현장 및 위상을 선정하기 위한 스폰서 회의⁷²를 거쳐 VAAP가 설립되었다.

다만, 전시, 극작, 작곡, 예술, 건축, 저널리스트, 시네마토그래피 등의 연합 조직과 소비에트 과학 아카데미, 소비에트 해외 거래부, 소비에트 문화부, 과학 기술 정부 위원회 및 각종 출판사와 영화제작사들이 스폰서로 참여하여⁷³ 공식적으로는 비정부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표방하지만, 그 실질은 기존의 공적인 기관을 통합하기 위하여 만든 기관으로 볼 수 있다.⁷⁴

VAAP는 기본적으로 VUOAP가 수행하던 저작물을 통제하고 관리하던 역할을 수행하고, 여기에 더하여 외국과의 저작권 유통을 독점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에 소비에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의 모든 출판업자 등은 소비에트의 저작자 혹은 출판사와 직접 접촉할 수 없으며 VAAP를 통해서만 라이선스 계약

⁶⁶ Ю. Г. Матвеев, *Международные КОНВЕНЦИИ ПО АВТОРСКОМУ ПРАВУ*, 2e éd,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87), p. 160.

⁶⁷ Corien Prins, “Emil Zola receives an answer: the Soviet Union is to join the Berne Convention,”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13(7) (1991), p. 6.

⁶⁸ the council of ministers은 구소련 각료회의로 내각에 해당하며 동 법령은 1973년 8월 16일에 제정되었다.

⁶⁹ 해당 법령을 통해 VAAP는 1973년 8월 16일로 모든 저작권 에이전시 연합(On the All-Union Agency on Copyrights)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으나, 이 법령 전문은 출판되지 않았고 발췌본이 1973년 12월 26일 이즈베스미야(Izvestia)라는 신문에 게재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Elena Muravina, “COPYRIGHT TRANSACTIONS IN RUSSIA,” p. 423 참조.

⁷⁰ Elena Muravina, *Ibid.*, p. 4.

⁷¹ Elena Muravina, *Ibid.*, p. 4; Dozortsev, “VAAP in the Mechanism of the Copyright,” *11 Soviet State And The Law* (1984), pp. 97~98.

⁷² Michael A. Newcity, *Copyright Law in the Soviet Union*, p. 126.

⁷³ Evgeni Guerassimov, *On the copyright agency of the USSR*, p. 3; Ю. Г. Матвеев, *Международные КОНВЕНЦИИ ПО АВТОРСКОМУ ПРАВУ*, p. 160.

⁷⁴ Michael A. Newcity, *Ibid.*, p. 127; Evgeni Guerassimov, *Ibid.*, p. 4.

을 체결할 수 있었다. 특히 로열티에 있어서도 이를 지급하고 받는 역할까지 수행하였다. 다만 TV, 라디오, 뉴스 등과 관련된 경우 VAAP의 독점권 밖에 있었다. 그리고 VAAP는 검열을 통하여 사회주의에 적합한 저작물만 출판을 허락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업무에 더하여 VAAP는 국가기관으로서⁷⁵ 세금을 받아 소비에트 정부에 전달하고 사상규제를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중적 역할을 수행함에 따른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의 업무는 많은 문제를 초래하였다. 즉, 형태는 민간기구의 외관을 갖고 있으나⁷⁶ 실제의 업무는 정부기구의 것과 유사한 점이 특색이다. 이후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의 추진으로 인하여 저작권법 체계가 시장경제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결국 VAAP의 독점은 1989년 폐지되었다.⁷⁷

2. VAAP의 기능

첫째, 이용료의 징수, 분배 및 지불 기능을 갖는다. 아울러 저작물 이용자 기관의 계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저작자로부터 지불된 적정 비율의 이용료 추산, 저작자로부터 지불된 송금액을 관리하였다. VAAP가 설립되기 전에는 개별적인 저작권관리단체들이 이를 수행하였으나, VAAP의 설립으로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소비에트 내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의 저작자와 그 승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⁷⁸

둘째, 저작권 해외 무역 중개 기능을 갖는다.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외국과의 무역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허가된 기관의 독점으로 이루어진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VAAP가 외국과의 독점적 거래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해외에서 소비에트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단체나 개인은 VAAP와 직접 계약(model contract)을 체결하여야 소비에트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했다. 이러한 계약 체계는 소련 정부의 독점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에트 저작자

⁷⁵ 외관은 민간기구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으나 역할의 본질은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점도 상당하였다.

⁷⁶ 소비에트 정부는 VAAP의 에이전시 활동에 어떠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VAAP 역시 소비에트 정부에 헌신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도 갖고 있지 않는다는 법적 지위 등이 민간기구의 외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Evgeni Guerassimov, *n the copyright agency of the USSR*, p. 5.

⁷⁷ Copyright law of Russia (검색일: 2016. 2. 19.)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Copyright_law_of_Russia>.

⁷⁸ Evgeni Guerassimov, *On the copyright agency of the USSR*, p. 7.

에게 이익을 남길 수 있어 거래 효과를 보장할 수 있었다. 또한 VAAP는 직접 혹은 중개를 통해 체결된 저작권 수출입 계약으로 인한 이용료를 수령 및 지불하였으며, 소비에트 및 해외 저작자와 승계자로부터 지불된 이용료에서 수수료의 공제, 소비에트 정부로부터 권한을 받아 소비에트 소득세 부과 기능도 담당하여 세금의 징수기능까지 갖고 있었다. 이렇게 확보된 수입은 기관의 운영비로 사용되었다.⁷⁹

셋째, 국제 조약 가입 및 해외 저작권 기관 간 상호 계약 체결 기능을 갖는다. 소비에트가 국제적인 저작권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VAAP는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개별국가와 협상하여 조약의 체결 등을 수행하였다. 이에 헝가리, 불가리아,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등이 VAAP를 통하여 소비에트와 저작권 보호에 관한 상호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VAAP는 이들 국가들과 저작물 이용을 위한 절차, 정보교환 등을 조정하기 위해 이들 국가 내 저작권 단체들과 비공식적 협약 (working agreement)을 체결하였다.⁸⁰

넷째,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VAAP는 저작권 관련 분쟁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였는데, VAAP 본부에는 20명의 변호사가 상주하여 유선 및 대면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이는 저작자들은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VAAP를 통해 신청하는 이유가 되었다. VAAP 내 변호사들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 이들은 법정을 가지 않고도 유선상으로도 분쟁 해결이 가능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법률 서비스의 효용이 큰 것은 아니었는데, 이는 분쟁의 대부분이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소비에트 저작권법의 입법 및 관련 연구의 수행도 이루어졌다.⁸¹

그 외에도 VAAP는 국제도서전시회 참여, 음악 및 영화 페스티벌에 참여함으로써 소비에트 내 저작자들의 저작물을 홍보하였으며, 다양한 국가의 저작권 협의체 및 에이전시 등과 교류함으로써 소비에트 저작자들의 작품이 해외에서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VAAP는 저작권관리단체의 하나로서 CISAC, BIEM, INTERGU, ALAT, WIPO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⁸²

⁷⁹ *Ibid.*, p. 9.

⁸⁰ 이때 오스트리아가 유일한 서구 국가로서 조약체결에 참여하였다.

⁸¹ Evgeni Guerassimov, *On the copyright agency of the USSR*, p. 11~13.

⁸² *Ibid.*, p. 16.

3. VAAP를 통한 저작권 거래의 특징

VAAP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소비에트 저작물을 해외에서 사용하고자 하거나 소비에트에서 해외의 저작물을 유통시키고자 할 때 반드시 VAAP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소비에트의 저작물에 관여될 때는 반드시 VAAP의 통제와 독점의 영향에 놓이게 된다.⁸³ 따라서 해외 출판사 등이 소비에트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VAAP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처럼 해외 출판사 및 저작권자 등과 비교할 때 VAAP의 이러한 역할은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비에트 헌법에 외국과의 무역은 특별히 정부가 권한을 부여한 기관에 의하여만 독점적으로 가능하며, 해외 출판사 등과 저작권을 거래하는 행위 역시 이러한 무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규범을 어길 시에는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하였다.⁸⁴ 결국 해외 출판사 등이 소비에트의 저작물을 해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VAAP를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법규상 해외 출판사 등과 소비에트의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VAAP가 배제될 경우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점에 개별적 계약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비에트 저작물의 해외 유통 및 해외 저작물의 소비에트 내에서의 유통 등에 대한 VAAP의 독점은 점차 강해졌으며, 만약 VAAP와 해외 출판사 등의 협상 결과 소비에트 저작물의 이용조건 등이 불합리하더라도 해외 출판사 등은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협상과정에서 VAAP가 일단 특정 해외 출판사 등을 거절 시, 그 출판사 등은 향후 소비에트에 접근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한편, 소비에트 저작물을 해외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는 VAAP가 유일한 합법적인 통로로 작용하므로 VAAP는 해외 출판사 등으로부터 매우 유리한 조건을 얻어낼 수 있었다. 특히 소비에트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해서 다수의 출판사 등이 경쟁을 하게 되어 VAAP 입장에서는 협상과정에서 더욱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VAAP의 상당한 지위는 해외 출판사 등이 서로 연대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하지 않는 한 소비에트에 극단적으로 유리한 조건 및 수익을 이끌어낼 수 밖에 없었다.⁸⁵ 아울러 VAAP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⁸³ Lana C. Fleishman, "The Empire Strikes Back: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Motion Picture Industry on Russian Copyright Law," *26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189 (Winter, 1993), p. 210.

⁸⁴ Michael A. Newcity, *Copyright Law in the Soviet Union*, p. 130.

⁸⁵ *Ibid.*, p. 131.

것이 협상을 통한 교섭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⁸⁶

다른 특징으로는 VAAP의 독점적인 권리행사는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제약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해외 출판사 등이 소비에트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소비에트 내에 자신의 저작물을 유통시키고자 할 때에는 반(反) 소비에트적인 내용을 반드시 소비에트에 우호적인 내용으로 수정하여야 했다.⁸⁷ 이와 같은 저작물에 대한 검열은 소비에트 저작권 거래가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용이하도록 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⁸⁸ 저작물에 대한 검열은 소비에트 영토 내에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으며, 1960년대에는 프랑스에서 출판된 소비에트 저작물에 대해서도 검열의 영향이 미치기도 할 정도였다.⁸⁹ 그런데 소비에트 국적의 솔제니친(Solzhenitsyn)이 VAAP의 허락없이 자신의 소설을 출판하기 위해 독일의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프랑스에서 출판한 사례⁹⁰에서 독일 연방대법원은 소비에트 정부의 외국과의 무역에 대한 독점은 제한된다고 하면서 독일법에 의하여 그 계약은 유효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⁹¹ 이 판결 이후 VAAP의 허락없이 체결된 저작물 이용계약의 파기권은 소비에트 영토내로 한정되었으며, 해외를 중심으로 점차 VAAP의 허락을 우회하는 저작권 이용계약의 체결이 증가하여⁹² 검열의 의미는 점차 축소되었다.

4. 시사점

폐쇄적이던 VUOAP 시대 이후, UCC 가입 이후의 VAAP의 설립배경과 기능, 기본적인 저작권법 체계 등을 볼 때, 소비에트의 당시 VAAP 체계는 북측의 저작

⁸⁶ Elena Muravina, "COPYRIGHT TRANSACTIONS IN RUSSIA," p. 436.

⁸⁷ J. Jinenett Robert, "Adherence of the U.S.S.R. to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Defenses under U.S. Law to Possible Soviet Attempts at Achieving International Censorship,"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8: Iss. 1, Article 5 (1974), p. 84.

⁸⁸ Elena Muravina, "COPYRIGHT TRANSACTIONS IN RUSSIA," p. 437.

⁸⁹ J. Jinenett Robert, "Adherence of the U.S.S.R. to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Defenses under U.S. Law to Possible Soviet Attempts at Achieving International Censorship," p. 84.

⁹⁰ Bruce Colfi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exploitation of creative rights: the struggle for expression by dissident authors," *European International Property Review*, 9(1) (1987), pp. 19~21.

⁹¹ Hermann Luchterhand Verlag GmbH v. Albert Langen, IZR 40/73.

⁹² Elena Muravina, "COPYRIGHT TRANSACTIONS IN RUSSIA," pp. 439~440.

권사무국과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사무국에 관한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VAAP의 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추론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다. 소비에트는 UCC 가입, 북측은 베른협약 가입 이후의 저작권 거래는 형식상 우리와 동일하게 일단 사인간의 거래행위로 볼 수 있다. 다만, 소비에트 및 북측의 경우에는 저작권 거래의 독점적 권리가 사실상 국가기구에 부여됨으로써 계약의 당사자가 사인(私人)인 해외 당사자에 비해 매우 높은 교섭상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소비에트에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에트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해외의 이용자가 VAAP의 교섭상의 지위에 적절히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간 협력하여 연합적인 대응을 하는 방안이 주로 활용되어 왔다. 즉, 거래 등의 계약을 독점하고 그 내용 등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VAAP에 의하여 해외의 각 이용자 간 지나친 경쟁에 빠지지 않도록 나름의 자구적 통제를 가함으로써 대응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북측의 저작권사무국에 대한 남측의 저작물 이용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측 역시 저작물 이용에 따른 비용 및 이용조건 등이 저작권사무국에 의하여 통제 및 설정이 되므로, 남측의 이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이용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해지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소비에트의 VAAP 사례에서와 같이 남측 내에서 북측의 특정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 간 경쟁하는 구도를 갖게 되거나, 시장 내 합리적인 이용가격 및 조건을 넘어서는 부당함을 발생시킨다. 그 결과 반사적으로 북측 저작권사무국 측에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게 되며, 반대로 남측의 저작물 이용 시장은 시장질서가 훼손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VAAP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측과의 저작권 교류 관계에서도 남측의 북측 저작물 이용자들을 통제 및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마련함으로써 일정부분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울러 그 역할은 국가에 의한 작용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체계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IV. 교섭력 문제의 대응방안

1. 남측 이용자 간 공동 거래체계 마련

북측과의 저작권 거래는 표면적으로는 북의 저작권사무국과 남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저작

권사무국은 국가기관으로서 저작권 관련 계약의 전권을 행사하지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등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서 저작권대리중개만을 업무의 영역으로 하고 있다. 이에 북측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등을 통하여 협의할 수 있는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역할이 협상을 주도적으로 하거나 다양한 이용자 간 권익을 조율할 권한은 없으며, 각 개별적 이용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대리하는 것에 한정될 뿐이다. 결국 국가기관인 북의 저작권사무국과 저작권 이용에 대한 교섭의 실질을 남측에서는 사실상 각각의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 직접적으로 불이익한 조건 등의 제시로 인한 어려움 보다, 특정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다수의 남측 내 이용자들 간의 경쟁이 우리 시장에는 더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북측의 교섭상 지위를 더욱 강화시키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에는 더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⁹³

결국 협상의 대상을 일치시킬 수 없다는 양쪽의 체계상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일단 남측 내 이용자들 간 과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에트 VAAP와 해외 출판사들 사이에서 출판사들이 공동대응 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특정한 북측 저작물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 간 협의기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매번 거래할 때마다 이러한 협의기구를 새로 구성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에 저작물 이용을 위한 대북 교류를 담당하는 상설적인 협의기구를 두고 남측 내 이용자 간 사전적인 조율 및 협의, 그리고 교섭시에는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등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다만, 한정된 재화인 특정한 북측 저작물을 두고 서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쟁하는 이용자들이 효과적으로 사전적 협의와 공동 대응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측 내에서 독점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규제를 마련하여 해결할 수 있다. 즉, 북측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특히, 그 저작물이 남측 내 최초로 출판되는 경우 등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동일한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다른 이용자의 유무를 확인 및 공동대응을 위한 대표단을 구성하도록 관련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⁹³ Michael A. Newcity, *Copyright Law in the Soviet Union*, p. 131.

있는 것이다. 한편, 북측 저작물의 남측 내 최초 출판 등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 선례를 활용하여 조건 등을 정하게 되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2. 남북 간 저작권공동기구 설립

남북 간 저작물 교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오랫동안 제시되어왔던 것이 남북이 공동으로 저작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저작권공동기구의 설립이었다.⁹⁴ 이를 통해서 저작물을 서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저작권공동기구의 역할에 관하여도 많은 논의가 있으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저작권관리 및 이용허락 등의 업무 이외에 남북간 저작권 교류에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개념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저작권기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저작물 및 저작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남북당사자 사이의 직접 계약 및 표준계약서를 통한 저작권계약 대행’, ‘계약의 이행감독’, ‘계약위반이나 저작권 침해의 분쟁해결 대행기능’, ‘저작권 교육과 홍보’, ‘북측에 저작권전문가의 파견 및 저작권전문가 양성’, ‘무역관세 절감’, ‘저작자의 사실 확인’, ‘저작권 보호기간 선정’, ‘자료의 수집·전시 및 인적교류’, ‘저작권관련 직통전화 운영’ 등의 업무가 제시된다.⁹⁵

둘째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저작권 정보의 제공’, ‘이용허락 계약을 통한 권리처리’, ‘저작권 교육과 홍보 지원’ 등의 업무가 제시된다.⁹⁶ 그런데 실제적인 업무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이러한 입장별로 명확하게 업무가 제시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집중관리업무에 한정된 업무를 범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그것으로 한정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그를 중심으로 역할을 부여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동기구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어야

⁹⁴ 최경수, “북측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심포지엄』 (2005), pp. 32~34; 허인, “남북한의 지식재산권과 협력 방안,” 『남북저작권법 관련 주요 법적 문제 제1차 전문가회의』 (2013. 6. 19), p. 33; 박영정, 『남북 문화교류채널의 제도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pp. 95~96 등.

⁹⁵ 김상호, 『남북문화교류와 저작권문제』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2), p. 73; 최은석, “북한의 저작권법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쟁점,” pp. 257~258.

⁹⁶ 최경수, “남북 방송교류를 위한 저작권 문제 점검,” pp. 96~97.

할 것이다.

사유재산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남북과 사유재산 존재의 부정을 전제로 하는 북측의 서로 상이한 이념하에 있는 각각의 집중관리제도를 단일의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민간기구와 국가기구, 개인의 권리 유통권한과 개인의 권리 유통권한 미부여, 거래의 활성화 목적과 통제의 목적 등과 같이 남북 양측의 환경은 매우 상이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제도의 연결고리를 찾아 서로간의 법체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즉 어느 정도 겹쳐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을 교섭력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공동기구는 북측 저작물을 직접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북에서 남으로의 이용허락 혹은 남에서 북으로의 이용허락 모두 동일한 기구를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이때 거래의 중요한 항목인 이용허락의 조건 및 가격 등은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구 내 위원회를 통하여 협의 및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느 정도 부담성을 배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공동기구 설립은 소비에트의 경우 1:n의 구조라 저작권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두는 것이 용이하지 않지만, 남북의 경우에는 1:1의 구조라는 점에서 효과적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용이할 수 있다.

다만, 남북이 서로 정치·경제 및 법률의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부당성’에 대한 개념과 그 기준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북측은 사인간의 재산관계를 민법으로 다루는 전통적인 대륙법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사회주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기관의 관리활동과 결부된 경제관계들은 일반적으로 행정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것이 특징이다.⁹⁷ 특히 부당함이라는 개념의 이면에는 이익이라는 요소가 전제되는 것인데, 북측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⁹⁸ 이는 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과도 연결되는데 북측 민법상 부당이득제도가 개인소유재산의 보호보다는 국가 및 협동단체 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생각해 볼 수 있다.⁹⁹ 결국 부당한 계약의 여부를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양측의 이러한 개념적 전제의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⁹⁷ 신영호 외 6, 『북한민법 주석』 (서울: 법무부, 2014), p. 9.

⁹⁸ 위의 책, p. 117.

⁹⁹ 위의 책, p. 1173.

3. 표준계약 사항의 합의

북측에서 저작물의 이용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의 요구대로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하며(북측 저작권법 제27조),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에게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때 요금은 가격제정기관에 의하여 정하도록 명시(동법 제31조)하고 있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북측은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 시 이용료가 사실상 국가에 의하여 정해져 있으며, 그 계약의 내용 역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표준화가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북측의 대외경제계약법 역시 제10조에서 계약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이 만든 표준계약서에 따라 체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교섭 상대방이 제안한 조건 등에 대해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남측의 이용자들이 서로 연대 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협상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남북이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 교류를 위한 구체적이고 정밀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거래의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도 효과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최근에 많은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지고 보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까닭은 특정한 표준계약서가 포괄하는 범위나 광범위한데 비하여 그 구체성 및 개별성이 낮아 사실상 현실 적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¹⁰⁰ 이에 남북 간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충분히 유형화하여 계약사항에 반영하여야 교섭력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는 저작권의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단 이후를 제외한 모든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남북의 저작권 교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것은 자명하다. 특히 자유로운

¹⁰⁰ 『일간대한뉴스』, 2015년 10월 22일(“영화분야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도입… 실효성은 미지수”); 『연합뉴스』, 2013년 7월 31일(“방송가 불공정 관행 개선 위한 표준계약서, 실효성 있나”) 등 참조.

시장의 존재가 보장된 남측에서의 북측 저작물 활용은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활발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수요 확대를 통한 남북 저작권 교류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북측의 독점적 저작권 교류창구로 인한 시장적 허용을 벗어나는 계약의 체결을 들 수 있다. 소비에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회주의 체계에서의 저작권 거래는 구조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 유리한 협상력을 가져다준다. 우리 역시 이러한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구체적인 사례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제3국을 통한 저작권 거래 등이 많이 이루어지며 북측의 저작권사무국을 통한 저작권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탓으로 생각된다. 물론 저작권사무국을 통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 남북관계의 경색과 화해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남북 간 저작권 교류 체계에서 북측의 저작권사무국이 갖는 협상상의 지위는 절대적이어서 남측의 북측 저작물 이용자들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북측에 대한 협상을 통한 공세보다는 우선 남측의 이용자들이 서로 과도한 경쟁에 빠지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북측과 저작권 교류를 위한 교섭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하여 남측 이용자 간 공동 거래체계 마련, 남북 간 저작권공동기구 설립 및 표준계약 사항의 합의를 통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은, 소비에트의 VAAP는 강력한 독점적 지위를 갖고 해외 출판사들과의 저작권 거래에 있어서 상당한 우월성을 누렸으나, 결국 시장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독점적 지위의 감소가 이루어진 바 있다는 점이다. 북측의 저작권사무국 역시 소비에트 VAAP와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흐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 물론 VAAP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던 저작권 수요가 상당하였다는 점이 전제되므로 해외 특히, 남측에 북측 저작물의 이용 요구가 확장되고 북측의 공민인 저작권자가 사유재산으로써의 저작권을 인식하여 그 시장이 나타난다면, 현재 북측의 저작권사무국을 통한 독점적 저작권 교류의 흐름 역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이때는 새롭게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고 이 문제에 관련된 각각의 정부부처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효과적인 교섭방안을 마련하여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 저작권 교류는 현재 체계상 다소 불균형한 것이 현실이다. 북측의 저작물을 남측에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제도의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남측의 저작물을 북측에서 보호하기 위한 논의 등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교섭력 문제 역시 북측의 저작권을 제도적으로 보

호하고 그 체계 위에서 북측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점이 전제된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긴 하나, 저작권자의 법익과 이용자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저작권법의 의의를 고려할 때 우리의 저작권도 북측에서 적절히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저작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3월 22일 ■ 심사: 5월 11일 ■ 채택: 5월 31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민법강의 I)제8판』. 서울: 박영사, 2012
- 김명기. 『남북간 저작권 상호보호방안 연구』. 서울: 통일부, 2002
- 김상호. 『남북문화교류와 저작권문제』.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2
- 박영정. 『남북 문화교류채널의 제도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 신영호 외 6. 『북한민법 주석』. 서울: 법무부, 2014
- 이 석. 『5·24 조치 이후 북중무역과 남북교역의 변화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
- _____. 『대북정책의 경제적 성과: 실증적 평가와 시사점』.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0
- _____. 『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 이론, 이슈, 정책』.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
- 이해완. 『저작권법』. 서울: 박영사, 2012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남북 사이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합의서(안)』.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1
- 최경수. 『북한 저작권법 및 남북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 최은석·허인. 『북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이해』. 서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신론사, 2014.

Newcity, Michael A.. *Copyright Law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8

2. 논문

-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 『법학연구』. 제11집, 2002.
- _____. “소련 저작권 제도의 해설 -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 『계간저작권』. 1990년 가을호, 1990.
- 박영정. “남북문화합의서 체결 추진 원칙과 방향.”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

- 토론회: 남북문화합의서의 원칙과 방향』. 2015. 6. 12.
- 박종배.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6권 제1호, 2011.
- 송진호. “북한법 이해의 새로운 모델: 분류와 체계.”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남북법제분과, 2012.
- 신현욱. “북한의 저작권 전담 행정기구 설립에 따른 남북 저작권 교류의 환경 변화 연구.” 『현대북한연구』. 12권 3호, 2009.
- 이병규. “저작권관리업법 제정의 쟁점과 입법론적 제언.” 『창작과 권리』. 제54호, 2009.
- 전영선. “남북 문화교류와 저작권 문제.” 『지적재산권』.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8.
- 조수선. “남북한 문화교류상의 저작권협력문제에 관한 일고찰 - 출판·음반·영상물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2000 봄철 정기 학술 발표대회』. 2000.
- _____. “남북교류상의 출판·영상·음반물에 관한 저작권 협력방안.” 『북한실태 2001 신진 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논문집』. 제5권, 통일부, 2001.
- 제성호. “통일에 대비한 지식재산권 기반조성전략: 북한의 산업재산권 법제 인프라에 대한 이해중심.”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 최경수. “남북 방송교류를 위한 저작권 문제 점검.” 『방송연구』. 2001.
- _____. “북측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심포지엄, 2005.
- 최상필. “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67호, 2015.
- 최은석. “북한의 저작권법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쟁점.” 『서강법학』. 제11권 제2호, 2009.
- 한지영. “북한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물의 법적 보호.” 『창작과 권리』. 2008.
- 허 인. “남북한의 지식재산권과 협력 방안.” 남북저작권법 관련 주요 법적 문제 제1차 전문가회의, 2013. 6. 19.
- Boguslavskii, Mark M.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Soviet approach.”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arterly*, 38(1), 1989.
- _____. *The Soviet Union, in International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1984
- Colfin, Bruc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exploitation of creative rights: the struggle for expression by dissident authors.”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9(1), 1987.
- Cramer, Allan P.. “International Copyright and the Soviet Union.” *DUKE LAW JOURNAL*, Vol. 531, 1965.
- Dozortsev. “VAAP in the Mechanism of the Copyright.” 11 *Soviet State And The Law*, 1984.
- Elst, Michael. “New Developments in the copyright legisl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Part 1.”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15(3), 1993.
- Fleishman, Lana C.. “The Empire Strikes Back: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Motion Picture Industry on Russian Copyright Law.” 26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189, 1993.

- Frenkel, William G., Sperber Jeffrey, "From Borscht Bits: Transfers of Technology and Industrial Property to the Soviet Union." 4 *DePaul Business Law Journal* 3, Fall/Winter, 1991.
- Goldman, William. "Berne-ing the Soviet Copyright Codes: Will the U.S.S.R. Alter Its Copyright Laws to Comply with the Berne Convention?." *Penn State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8 No. 3, Article 4, 1990.
- Guerrassimov, Evgeni. "On the copyright agency of the USSR." UNESCO, Paris, 20 August, 1985.
- Jinenett, Robert J.. "Adherence of the U.S.S.R. to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Defenses under U.S. Law to Possible Soviet Attempts at Achieving International Censorship."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8 Iss. 1, Article 5, 1974.
- Muravina, Elena. "Copyright Transactions in Russia PART I. The VAAP REA: 1973~1991." Spring, *NEW MATTER* 1993.
- _____. "The Structure of the Russian Entertainment Industry." *WHITTIER LAW REVIEW*, Vol 20, 1999.
- Pozhitkov Igor. "Author's right and neighbouring right protec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Entertainment Law Review*, 5(4), 1994.
- Princs Corien. "Emil Zola receives an answer: the Soviet Union is to join the Berne Convention."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13(7), 1991.
- Tiefeobrun Susan. "Piracy of Intellectual Property in Chin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A Comparison." 46 *Buffalo Law Review* 1, WINTER, 1998.
- Vermeer Monica B. "A New Rea in Russian Copyright Las: Protecting Computer Software in the Post-Soviet Russia Federation." 5 *Transnational Law & Contemporary Problems* 147, Spring, 1995.
- Матвеев ю. г., Международные КОНВЕНЦИИ ПО АВТОРСКОМУ ПРАВУ, 2e éd,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78
- Богуславский м.м., Участие СССР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хране авторских прав, Юрид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1974

A Study on Measures to Secure Bargaining Power for Balanced Copyright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i-Yeol Kim and Na-Bin Choi

With the recently strained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exchange of copyrights was not an exception in the matters influenced by such friction. However, it is evident that the copyright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l expand continuously in the long term in that South and North Korea have shared their culture and history with each other except since their division. In particular, it seems that the works of North Korea will be actively utilized in South Korea where a free market is guaranteed. However, as North Korea's window for copyright exchange is exclusively operated,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that exceeds market acceptance standards may hinder the revitalization of copyright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seen in the case of the USSR, a socialist state structurally has a higher bargaining power in copyright exchanges in the socialist system. South Korea, also, will not be free from such structure, and the Copyright Office of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have an absolute bargaining status in the current copyright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us, users in South Korea, who use works of North Korea, need to respond appropriately. Accordingly, this study determined that users in South Korea shall not resort to offenses through direct bargaining with North Korea but negotiate for copyright exchange based on their reasonable decision and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in which they do not excessively compete with one another. For this, this study suggested the preparation of a joint trading system for users in Korea,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Korean joint copyright organization, and an agreement on standard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Key Words: North Korea, copyright, the Copyright Office of North Korea, VAAP, Soviet, Contract for using copyright, Bargaining Power